

瑞山市諸證明等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1. 3. 28
總務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1. 3. 20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3. 21
- 라. 上程日字 : 2001. 3. 28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 文哲柱)-제안설명생략

가. 改正理由

-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이 없음.
-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코자하며
- 부동산중개업 법령 개정으로 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효율을 조정코자함.

나. 主要骨子

- 수수료 감면 등에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안 제7조).
-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관계되는 공부의 열람 삭제(안 제7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기관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안 제7조).
-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 요율 5종목 신설(별표1)

3. 專門委員 檢討意見 - 검토보고 생략

-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하거나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먼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제1항의 단서조항인 『...유선 또는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 유선 또는 도선의 안전검사와 검사수수료 납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은자는 시·도의 조례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단서조항은 시·도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관 업무로 시·군에 재위임되지 아니하여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둘째, 같은조례 제7조제1항3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의 삭제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어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예비군 육성·지원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본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지원실적이 미미해도 향후 업무여건 변화로 수수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시책에 역행하는 개정 조례가 되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같은조례 제7조제1항5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 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을 신설하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위 같은법 동조항에 세제상 조치·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예우의 기본이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본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이용시설에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침.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요지이므로 먼저 검토사항으로 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가 아니고 수익적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며
- 또한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서산시의 건전한 세외수입 확립과 안정된 지방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지와 위 조항이 신설될 경우 수수료 징수 행정의 공익성과 필요성, 합리성이 있는지와 일반 주민과 불합리한 차별을 주는지에 있음.
-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수료 감면시 장애인 2,801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434명으로 총 3,235명이 연간 발급통수 5통으로 예측하여 약 수수료 면제액 8,007천원 정도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 오히려 본 조항이 신설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제도로서 일반주민과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며 시책적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별표1”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청수수료 요율 5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의 법률조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 1. 28 전문 개정되었으며
 -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 중개업등록신청(공인중개인) 종전 5,000원 → 10,000원으로
 - 등록중개교부신청(법인) 종전에는 수수료 없으나 10,000원으로
 - 등록중개교부신청(공인중개인) 종전에는 수수료 없으나 5,000원으로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법인) 종전에는 수수료 없으나 20,000원으로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공인중개인) 종전에는 수수료 없으나 10,000원으로
 - 그동안 상위법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이 낮아 현실화하고 무료서비스 요금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신설조항으로 기하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에 따른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마쳤으므로 수수료 요율의 적정을 기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대로 일부 조항 제외하면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20/ 호
의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서산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3월 20일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제출일자 : 2001. 3. 20

제출자 : 서산시장

1.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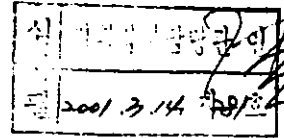
-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음
-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코자하며
- 부동산중개업 법령 개정으로 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요율을 조정코자함

2. 주요골자

- 수수료 감면 등에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 (안 제7조)
-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이 직접관계되는 공부의 열람 삭제(안 제7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안 제7조)
-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 요율 5종목 신설 (별표 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단서중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을 “지적업무 수수료는”으로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기관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 1】 중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구분란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4. 지적관계 가. 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 확인 등)			
4. 지적관계			
나.중개업등록 신청(법인)	1건	20,000	
다.중개업등록 신청(공인중개인)	1건	10,000	
라.등록증 재교부신청 (법인)	1건	10,000	
마.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1건	5,000	
바.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u>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u></p> <p>1 ~ 2 (생략)</p> <p>3. <u>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u></p> <p>4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별표 1】</p>	<p>제7조 (-----)①-----</p> <p>-----</p> <p>-----, 지적업무 수수료는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 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p>(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 확인 등)</p> <p>4. (생략)</p> <p>가 (생략)</p> <p><신설></p> <p>9. (생략)</p>				<p>(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p> <p>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중개업등록 신청(법인) 1건 20,000</p> <p>다.중개업등록 신청(공인중개인) 1건 10,000</p> <p>라.등록증 재교부신청(법인) 1건 10,000</p> <p>마.등록증 재교부신청(공인중개인) 1건 5,000</p> <p>바.중개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 1건 20,000</p> <p>9. (현행과 같음)</p>			